

의안번호	2115173
의 퇴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2.2.22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퇴직소득 5천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세 면제

【비용추계서】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요약

I. 재정수반요인

□ 퇴직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시 퇴직소득세 면제(안 제22조제5항)

II. 비용추계 결과

□ 재정수입변화: 향후 5년 간 총 -1조 5,129억원, 연평균 -3,026억원

[표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3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퇴직소득금액 1억원 이하 퇴직소득세 면제 (안 제22조제5항)	-2,809	-2,918	-3,026	-3,135	-3,241	-15,129	-3,026

차 례

I. 비용추계 결과	1
II. 재정수반요인	1
III. 비용추계의 전제	1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	2

일러두기
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-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I. 비용추계 결과

- 퇴직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소득세를 면제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3년 2,809억원, 2027년 3,241억원 등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 총 1조 5,129억원(연평균 3,02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3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퇴직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퇴직소득세 면제 (안 제22조제5항)	-2,809	-2,918	-3,026	-3,135	-3,241	-15,129	-3,026

II. 재정수반요인

- 퇴직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시 퇴직소득세 면제(안 제22조제5항)
 - 개정안은 퇴직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III. 비용추계의 전제

- 본 비용추계는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
 -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- 연간 퇴직소득세 징수액 자료와 퇴직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

- 2020년 퇴직소득세 징수액에 퇴직자의 퇴직소득규모별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대상세액 비중을 곱해 퇴직소득 규모별 퇴직소득세 추정
 - 퇴직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의 신고대상세액은 연금계좌의 퇴직급여를 포함한 퇴직소득금액 기준 신고대상세액 자료로서 이연퇴직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징수금액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계에 활용하지 못하고, 퇴직소득금액 규모별 신고대상세액 비중을 추계에 활용
- 2020년 기준 세수효과 추계 후 향후 세수효과는 NABO 중기 재정전망의 퇴직소득세 증가율을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□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

- (추계 대상) 퇴직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자의 퇴직소득세 납부액
- (추계 방법) 연간 퇴직소득세 징수액에 퇴직자의 퇴직소득규모별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대상세액(결정세액) 비중을 곱해 퇴직소득규모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액 추정
 - 퇴직자의 퇴직소득규모별 원천징수 신고대상세액은 퇴직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 자료를 활용
 - 퇴직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대상세액은 연금계좌의 퇴직급여를 포함한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고대상세액 자료로서 이연퇴직소득세¹⁾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징수금액과는 차이가 있음

1)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, 일시금 수령 또는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

2. 상세 내역

- (제도개요)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과세하며, 퇴직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
 -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
 -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
 -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
 -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공제금
 -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
- 근로자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(원천징수)하지 않고, 연금계좌에서 그 퇴직소득이 인출될 때 소득세 납부

[표 2]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

구분	연금외수령 (중도인출, 일시금 수령 등)	연금수령
이연퇴직소득 ¹⁾	퇴직소득세	연금소득세 (퇴직소득세의 70%, 60% 원천징수, 분리과세) ²⁾

주: 1) 운용수익 포함

2) 연금외수령 가정 시 원천징수세율의 70%(연금 수령연차 10년 이하), 60%(연금 수령연차 10년 초과)

- (징수실적) 2020년 퇴직소득세 징수액은 1.4조원 규모임

[표 3] 퇴직소득세 징수 실적

(단위: 조원)

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
퇴직소득세	0.8	1.1	1.6	1.2	1.3	1.3	1.4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열린재정」

- (추계 결과) 퇴직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퇴직자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면제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0년 기준 2,452억원 감소 예상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: 2020년 기준

(단위: 명, %, 억원)

퇴직소득금액 규모	퇴직자 인원	퇴직소득 신고대상세액 비중 ¹⁾	퇴직소득세 징수액 추정 ²⁾	세수효과
	A	B	C=13,612억원×B	D
합계	3,293,296	100	13,612	-2,452
1천만 이하	2,490,889	5.2	702	-702
2천만 이하	405,020	4.8	659	-659
4천만 이하	202,568	5.9	796	-796
5천만 이하	41,850	2.2	295	-295
6천만 이하	24,678	2.0	267	-
8천만 이하	30,734	3.5	472	-
1억 이하	18,009	3.0	407	-
2억 이하	46,261	13.2	1,798	-
3억 이하	17,249	10.8	1,468	-
5억 이하	10,230	14.9	2,034	-
5억 초과	5,808	34.6	4,715	-

주: 1)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의 퇴직급여액 규모별 신고대상세액 비중

2) 2020년 퇴직소득세 징수세액(1조 3,612억원)에 퇴직소득금액 규모별 신고대상세액 비중을 곱하여 퇴직소득규모별 징수액 추정

자료: 「2021 국세통계연보」 '4-4-2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Ⅱ'에 대한 국세청 제출자료, '4-1-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Ⅰ'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세수효과는 NABO 중기 재정전망²⁾의 퇴직소득세 증가율을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□ 개정안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퇴직자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면제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3~2027년 동안 총 1조 5,12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- 중기재정전망의 퇴직소득세 증가율 적용시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는 2023~2027년 동안 총 1조 5,12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－ 실제 퇴직소득규모별 퇴직소득세 징수액 규모에 따라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3~2027년

(단위: 억원)

세목	2023	2024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퇴직소득세	-2,809	-2,918	-3,026	-3,135	-3,241	-15,129	-3,026

2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1~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」, 2021.10.

국회예산정책처	세제분석1과
과장	박연서
추계세제분석관	박지원
연락처	02-6788-4662
	jwpark1209@nabo.go.kr
